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3
----------	-----

2022. 3. 22.
자치행정위원회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임의 규정인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안 제11조)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체화 (안 제11조 제1항)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위원 구성 (안 제11조 제1항~제4항)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제5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사무국 및 실무협의체 운영 권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협의체인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현행 실무협의회의 단순 설치규정을 10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9월에 개최한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실무협의회의 설치·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노사민정 간의 협력 활성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 하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하남 등 11개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불임참고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693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22일
제 출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실무위원 수를 사용자 측과 균등하게 구성하도록 단서규정 마련

2. 주요골자

가. 안 제11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3항의 단서를 신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나. 안 제11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수정.

“1.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실무협
의회의 설치) 제3항의 단서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
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와 제2호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를 각각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1조(실무협회의 설치) ③ 실 무협회의 위원장은 노사·고용 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신 설></p> <p>1. <u>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u></p> <p>2. <u>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u></p> <p><이하생략></p>	<p>제11조(실무협회의 설치) ③ -- ----- ----- ----- ----- --위촉한다. <u>이 경우 근로자 대 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u></p> <p>1. <u>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u></p> <p>2. <u>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u></p>